

『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과대·과소한 통·리·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17개통 증설 (안 별표13, 별표14, 별표19, 별표23, 별표24, 별표27)
 - 통·리 : 625개 통리(통 453, 리 172) ⇒ 642개 통리(통 470, 리 172)
 - 도량동(증2개통) : 도량아이센스 신축 (38통), 도량미소지움 신축 (39통)
 - 선주원남동(증3개통) : 봉곡e-편한세상 신축 (51통, 52통)
과밀통 분리(4통 4~5반 → 53통 1~6반)
 - 비산동(증2개통) : 원룸신축으로 인한 과밀통 분리
(2통 1~8반 → 7통 1~3반, 8통 1~5반)
 - 상모사곡동(증3개통) : 과밀통 분리(4통 3,4,6,7반 → 33통 1~4반)
한신희플러스 신축 (34통, 35통)
 - 임오동(증1개통) : 오태폴리비에 신축 (27통)
 - 양포동(증6개통) : 과밀통 분리(8통 1~3반 → 48통 1~4반)
우미린더스카이 신축 (49통, 50통)
중흥S-클래스 신축 (51통, 52통, 53통)

○ 139개반 증설, 23개반 폐지 (안 별표8, 별표10, 별표13, 별표14, 별표16, 별표17, 별표19, 별표23, 별표24, 별표27)

• 반 : 4,478개반 ⇒ **4,594개반 (116개반 증)**

- 장천면(증1) : 과대지역으로 반분리 (상장1리 1~2반 → 1~3반)
- 원평1동(감8) : 과소반 통합 (1통 2반 → 1반, 2통 1~8반 → 1~5반, 4통 1~11반 → 1~8반, 6통 2반 → 1반)
- 도량동(증13) : 과밀반 분리 (32통 13~15반 → 38통 1~3반), 도량아이센스 신축(38통 3개반), 도량미소지움 신축 (39통 10개반)
- 선주원남동(증44) : 과밀반 분리 (4통 1~5반 → 1~4반, 4통 4~5반 → 53통 1~6반), 봉곡 e-편한세상 신축 (51통 19개반, 52통 20개반)
- 형곡2동(증3) : 과밀반 분리 (1통 8반 → 9반, 16통 7반 → 9반)
- 신평1동(감15) : 과밀반 분리 (1통 6반 → 7반), 과소반 통합(3통 1~11반 → 1~6반, 4통 1~15반 → 1~8반, 6통 13반 → 12반, 8통 1~8반 → 1~6반, 9통 6반 → 5반)
- 비산동(증8) : 과밀반 분리 (2통 1~8반 → 7통 1~3반, 8통 1~5반)
- 상모사곡동(증20) : 과밀반 분리(4통 3,4,6,7반 → 33통 1~4반), 한신희플러스 신축 (11통 7반 → 6반, 34통 11개반, 35통 10개반),
- 임오동(증5) : 오태폴리비에 신축 (27통 5개반)
- 양포동(증45) : 과밀반 분리 (8통 4~6반 → 8통 1~5반, 8통 1~3반 → 48통 1~4반), 우미린더스카이 신축 (49통 10개반, 50통 8개반), 중흥S-클래스 신축 (51통 8개반, 52통 8개반, 53통 8개반)

- 신축건물 지번 추가 및 오류·누락 지번 정정 (안 별표10, 별표12, 별표15, 별표17, 별표22)
 - 원평1동 : 6개통 67개반 정정
 - 지산동 : 4개통 25개반 정정
 - 형곡1동 : 17개통 42개반 정정
 - 신평1동 : 3개통 17개반 정정
 - 광평동 : 5통 6반 관할지번 추가(신축건물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기 타 : 통리 증감에 따른 「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」 일부개정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과대·과소한 통·리·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통리는 625개 통리에서 도량동 2개통 증설, 선주원남동 3개통 증설, 비산동 2개통 증설, 상모사곡동 3개통 증설, 임오동 1개통 증설, 양포동 6개통 증설로 642개 통리로 조정하였고,

- 반은 4,478개 반에서 139개 반 증설, 23개 반 폐지로 총 116개 반이 증가된 4,594개 반으로 조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본 개정조례안은

최근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 등으로 지역여건이 변화된 지역의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,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